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해 1987년 2월 설립된 법인으로서 최상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지역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가치 「SAFETY」를 바탕으로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공공보건의료로 선도할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가. 임상교수

연번	진료과 명	세부 전공	근무지별 모집인원		
			진주	창원	합계
1	피부과	피부과 일반	-	1	1

모집 분야별 응시 자격 및 제출서류

가. 응시 자격

구분	세부 사항
임상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예정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임상강사 또는 그 이상의 직으로 아래의 임용예정일 기준 1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 채용 예정 진료과에 전공의 정원이 배정된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은 임상강사 그 이상의 직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한다. 단,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간과 전공의 정원이 배정되지 않은 기간에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이하 진료전담교수의 임상강사 이상의 근무경력 인정기준에서 같다.) ○ 채용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SCIE, A&HCI, SS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후보지 포함)에 게재 또는 발표된 논문 실적이 100% 이상인 사람. ※ 단, 4년제 이상 대학교(대학병원 포함)에서 전임교원, 기금교수 또는 임상교수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급으로 4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상기의 기간(3년 이내)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연구실적물 인정 환산율과 연구실적물 목록은 [별첨 1], [별지 서식 3] 참고 ○ 교육 및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별첨 3] 참고 ○ 교육·연구 경력 자격 기준 및 교육·연구경력 경력인정 환산율은 [별첨 2], [별첨 3] 참고 (이하 진료전담교수의 교육 및 연구경력 기준에서 같다.) ○ 교육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군의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군복무 경력 소유자가 전역 직후 임상강사로 근무한 10개월 경력은 1년으로 본다.

나. 제출 서류

- 이력서(임상교수, 진료전담교수 지원자의 경우 임상강사 이상 경력 기재 필수) [별지서식 1]
- 진료활성화 및 향후 진료계획서(임상교수, 진료전담교수에 한함) [별지서식 2]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연구실적물 목록 및 연구실적 (임상교수에 한함) [별지서식 3] ※ 한글파일 별도 이메일 제출
 - 연구실적물은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계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게재예정연구실적물은 제외함.
 - 학술지 등급, 인용지수 등 연구실적물 인정 환산율과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 SCIE급 논문은 <https://jcr.clarivate.com/JCRLandingPageAction.action>, 등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는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등에서 확인한 증빙자료를 해당 페이지만 출력하여 제출
 - 「논문 인용지수」와 「JCR 상위10%이내」 해당여부는 최근 발표된 지수와 순위를 기준으로 적용함.
 - 「Impact Factor」란에는 해당 학술지의 최근 인용지수를 기재. IF지수가 없는 학술지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연구실적물은 원본(또는 별쇄본) 또는 파일(이메일 제출)을 제출 바람. 원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 출판사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컬러로 출력하여 출력물 원본을 제출하거나, 발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국·공립 도서관으로부터 원본 대조필을 받아 첨부하여 제출 바람.
 - 인쇄물과 Web으로 발간되는 학술지 게재논문으로서 Web에 공개된 논문은 권(Volume)과 수록면(Page), 게재 일자(Publication Date)가 명시되어야 함 (인쇄물과 Web의 게재 일자가 다를 경우 Web의 게재 일자를 기준으로 함)
 - Web으로만 발간되는 학술지 게재논문으로서 Web에 공개된 논문은 권(Volume)과 수록면(Page), 게재 일자(Publication Date)가 명시되어야 함.
 - 4년제 이상 대학교(대학병원 포함)에서 전임교원, 기금교수 또는 임상교수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급으로 4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상기의 기간(3년 이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 부수	제출 시기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서류전형 합격 이후
인턴, 레지던트 수료증명서	각 1부	서류전형 합격 이후
경력증명서 (임상교수, 진료전담교수 지원자 임상강사 경력 필수 제출)	각 1부	서류전형 합격 이후
학위(학사, 석사, 박사)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서류전형 합격 이후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서류전형 합격 이후
채용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 서식)	각 1부	서류심사 합격 이후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첨부 서식)	1부	서류심사 합격 이후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첨부 서식)	1부	서류심사 합격 이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첨부 서식)	1부	서류심사 합격 이후
친인척 재직현황 조사서식 (첨부 서식)	1부	서류심사 합격 이후
신체검사관련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첨부 서식)	1부	서류심사 합격 이후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 동의 서약서 (첨부 서식)	1부	서류심사 합격 이후

III 전형 일정,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및 지원서 접수 방법

가. 지원서 접수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모집인원 총원시까지

나. 임용예정일: 개별안내 (병원 인력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접수 방법

- 방 법: 내원 및 우편 접수(공휴일은 내원 접수를 받지 않음)
- 접수처: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총무과 [우52757] 또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총무팀 [우51472]

라. 전형 방법

전형단계	대상	심사 방법
서류전형	임상교수	○ 모집 분야별 응시자의 기초심사자료 적합 제출 여부
대표논문 심사	임상교수	○ 대표논문 2부의 질적 수준 심사 ○ 심사위원 구성과 적격 여부 판단 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함
서류심사	임상교수	○ 모집분야별로 정해진 응시 자격의 충족 여부 등을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면접심사	임상교수	○ 지원자의 인성 등 심사 ○ 면접평점 평균이 40점 이상 특정한 사람 중에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은 원장이 따로 정함.

* 가산점

- 1)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합니다.
- 2) 가산점 적용 대상자는 면접시험 당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가산점은 면접 심사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합니다.
- 4) 가산점에 관하여 이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릅니다.

IV 합격자 결정

가. 합격자 결정

- 1) 임상교수, 진료전담교수: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면접평점 평균이 40점 이상 특정한 사람 중에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 2) 임상강사: 서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 3) 공통: 신체검사,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임용예정자(합격예정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 합격예정자 발표일 기준, 본원(분원 포함)의 재직 중인 직원으로 신체검사,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이미 실시한 자의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합격예정자 발표일 기준 1년 이내 본원(분원 포함)에서 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합격자 직급

- 1) 임상교수: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음.
- 2) 진료전담교수: 조교수
- 3) 임상강사: 임상강사

다. 임용 기간

- 1) 임상교수
 - 조교수: 최초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
 - 부교수: 최초임용일로부터 6년 이내
 - 교 수: 최초임용일로부터 6년 이내
- 2) 진료전담교수(조교수): 최초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 3) 임상강사: 최초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라. 재계약 임용

- 1) 임상교수의 재계약 임용은 신규임용직급 임용 기간의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재계약 임용 기간은 아래와 같음. (재계약 임용 기간은 정년을 초과 할 수 없음.)
 - 조교수: 4년 이내(횟수 제한 없이 재계약 임용함.)
 - 부교수: 6년 이내(횟수 제한 없이 재계약 임용함.)
 - 교 수: 6년 이내(횟수 제한 없이 재계약 임용함.)
- 2) 진료전담교수의 재계약 임용기간은 아래와 같음. (재계약 임용 기간은 정년을 초과 할 수 없음.)
 - 조교수: 4년 이내(횟수 제한 없이 재계약 임용함.)
- 3) 임상강사의 재계약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함.(재계약 임용 기간은 정년을 초과 할 수 없음.)

V 기 타

가. 채용공고는 병원 홈페이지 및 채용 관련 홈페이지 공고

나. 인사발령에 따라 본원 또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순환 근무할 수 있음.

다. 신규 임용된 임상 조교수의 승진 소요 연수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임상강사 또는 그 이상의 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라. 기타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함.

별첨1 연구실적을 인정 환산율

연구실적물 인정 환산율

공동저자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				
저자수	한국연구재단 (후보지포함)	SCIE급	JCR 상위 10% 이내	주저자수	한국연구재단 (후보지포함)	SCIE급	JCR 상위 10% 이내	논문인용 지수 (IF) 20이상
1명(단독)	-	-	-	1명	100%	130%	150%	200%
2명	50%	65%	75%	2명	80%	104%	120%	200%
3명	33%	43%	50%	3명	70%	91%	105%	160%
4명 이상	25%	33%	38%	4명 이상	60%	78%	90%	140%

비고

1. 연구실적물은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2. 주저자수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JCR상위 및 논문 인용지수(IF)는 공고기준 최근 자료를 적용한다.
4. 증례보고논문(CASE REPORT)은 100%의 범위 내에서 인정 한다. 다만, 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된 증례보고 논문은 비증례 논문으로 본다.

2026. 4. 1.

경 상 국 립 대 학 교 병 원 장

별첨2 교육 및 연구경력 자격 기준

교육 및 연구경력 자격 기준

직 급	교육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	계
교 수	6	4	10
부 교 수	4	3	7
조 교 수	2	2	4

비 고

교육경력연수와 연구실적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교육경력연수와 연구실적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첨3 교육 및 연구경력 인정기관 및 환산율

교육 및 연구경력의 경력인정 기관 및 환산율

경 령	환산율(%)
1. 대학의 기금교수, 계약교수로 근무한 경력	100
2. 대학병원의 임상교수로 근무한 경력	100
3.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	100
4. 석사학위 취득자: 석사과정 재학기간	100
5.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	70
6.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 석사과정 재학기간	70
7. 국가기관(시설 및 군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당해 전문 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100
8.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70
9. (한)의원 개업기간	50
10. 전문의사로 근무한 기간	70
11.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력	50 ~ 100
비고	
1. 교육 및 연구경력의 경력인정 기관 및 환산율에 관하여 전 각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자격인정 심사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2. 표 제3호 내지 제6호의 재학기간은 학위 취득 또는 학위 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을 의미하며, 경력기간은 학기 단위(1학기는 10개월로 계산한다)로 계산한다.	
3. 표 제4호(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 한다)와 제6호에 따른 재학기간은 2년 범위에서 인정한다.	
4. 표 제3호(석·박사 통합과정을 포함한다)와 제5호(석·박사 통합과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재학기간은 5년 범위에서 인정한다.	
5. 제1호 내지 제11호의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환산율이 높은 어느 하나의 경력을 인정한다.	
6. 제11호에 따른 기타 경력의 경력인정기관과 환산율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